

외환특례세법 (아)

제 1 조 (납세의무자) 국내에서 다음 각 호에 계기하는

외환 취득자는 본법에 의하여 외환특례세 (外換特別

稅) 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

1. 외환을 취득하여 한국은행의 외환계정 (外換計定)

중 수입계정 (수입물자의 대금과 수출입에 수반하

는 비용으로 지불할 수 있는 외환계정을 말한다)

에 예입 (預入) 하는 자는 단 제 7 조의 규정에 의하

여 징수 (徵收) 된 외환의 이체예입 (移替預入) 의

경우는 제외한다

2. 민수용 원자재 (民需用原資材) 나 소비재 (消費材)

의 구매(購買)를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
 관이 대한민국에 제공하는 외환 또는 민수용
~~세액~~ 원자재나 소비재의 구매를 위하여 정부 또
 는 한국은행이 소유하는 외환(外資)외자구매외환(外資
 購買外換)이라한다 이하 같다(을 취득하는 자

제 2 조 (비과세) 다음의 각호에 제기하는 자에 대하여
 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외환특별세를 부
 과하지 아니한다

- 一 국가(國家), 도(道), 서울특별시, 시(市), 읍(邑),
 면(面), 교육구(教育區)

- 二 주한외교기관(駐韓外交機關), 국제연합기관과 주
 한 외국원조기관

제 3 조 (과세표준의 계산) 외환특별세의 과세표준(課



稅標準)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

다

一 外환 칩득자가 제 一 조의 규정하는 바에 해당 하는

에 입 또는 칩득을 하였을 경우의 그 외환의 표시

가액 (表示價額) 단 미화 (美貨) 이외의 외환에

있어서는 이를 당해 외환과 미화와의 공정 환산률

(公定換算率)에 의하여 미화로 환산한 가액 (외

환의 표시가액이라 한다 이하 같다)

二 外자구매 외환의 제 五 조의 규정에 의한 낙찰가액

(落札價額)에서 당해 외환을 정부가 정한 환화

(圓貨)와의 환산률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공제

한 금액 (외자구매 외환의 과세 가액 (課稅價額)이라

한다 이하 같다)

제 四 조 (세률) 외환특별세는 다음 각호의 정(定)하는

바에 의하여 부과한다

一 외환의 표시가액의 매(每) 一분에 대하여 一백환

단 수출불구납부로 인하여 취득한 외화에 대하여

여는 一분에 대하여 五十환

二 외자구매외환의 과세가액의 백분의백

제 五 조 (외환의 매각방법) 한국은행이 외자구매외환을

매각할 때에는 정부가 정한 환화와의 환산률에 의한

외환의 가액과 그 외환에 대하여 부과할 전조제

二호의 추정액에 의하여 계산한 외환특별세 상당액(

相當額)과의 합계금액을 입찰가액(入札價額)으로하

여 대통령령의 정하는바에 의하여 매각한다

제 六 조 (외환의 신고) 제 三 조 제 一 호에 해당하는자는





그 외환의 표시가액을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
정부 또는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한다

② (외환매각의 신고와 공고) 한국은행이 외자구매
외환을 매각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
의하여 정부에 신고함과 동시에 이를 공고(公告)하
여야 한다

제七조 (징수) 한국은행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
하여 외환특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

제八조 (납부) 한국은행은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
수한 외환특별세를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

주시 정부에 납부하여야 한다

제九조 (과오납금의 환부)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

부한 외환특별세액의 과오납금(過誤納金)이 있을

174

경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환부
(還付)한다

제十조 (장부비치의 의무) 한국은행은 외환의 예입
또는 매각과 외환특별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
부 기타 증빙서류 (證憑書類)를 비치 (備置) 하여야
한다

제十一조 (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) 세무 (稅務)에
종사하는 공무원은 외환특별세에 관한 조사에 있어
서 필요한 때에는 한국은행 및 이와 거래 (去來)가
있는 자 또는 거래가 있다고 인정 (認定)되는 자에
대하여 질문을 하며 또는 그 장부서류 (帳簿書類)
기타물건을 검사 (檢査)할 수 있다

제十二조 (부가세 금지) 도 서울특별시 시읍면



가타 공공단체(公共團體)는 외환특별세의 부가세(附加稅)를 부과(賦課)하지 못한다

② (공채 청가 금지) 본법 시행 이후에 있어서 외환특가가 차지하는 외환과 그 외환으로 수입(輸入)하는 물자(物資)에 대하여는 공채(公債)를 청가소화(添加消化)하지 못한다

제十三조(시행령)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(定)한다

부칙

①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

② 본법 시행전(施行前)에 시행된 타(他) 법령(法令)의 감면(減免)에 관한 규정은 외환특별세에 있어서 이를 적용(適用)하지 아니한다

공백

외환특별세법안 제안 이유서

외환(外換)을 취득하여 한국은행의 외환계정(外換計
 定) 중 수입계정(輸入計定)에 예입(預入)하는 행위를
 또는 민수용 소비물자(民需用消費物資)의 구매(購買)
 를 위한 외환의 취득행위(取得行爲)에 대하여 외환
 특별세(外換特別稅)를 부과(賦課)함으로써
 (一) 세원(稅源)의 음성화(陰性化)를 방지하고
 (二) 외환공매(外換公賣)에 대한 투기성(投機性)을
 제거(除去)하고
 (三) 현행의 국채참가소화(國債添加消化)를 지양(止揚)
 하고 조세(租稅)으로써 징수하여
 재정자금(財政資金)의 확보(確保)와 통화(通貨)의

팽창 (膨脹) 을 방지하여 경제 안정 (經濟安定) 에 기여
(寄與) 함을 목적으로 외환 특별세법 (外換特別稅法) 을
제정하고자 제안하는 바입니다.